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(제 회)	

폐 교 재 산 의 활 용 촉 진 을 위 한
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유은혜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19 등의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근거(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,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)를 마련하여 시·도교육청 폐교재산의 지속적인 활용을 도모하고자 함..

3. 주요내용

가. 대부요율 조정 절차 간소화

폐교활용법 제3조 단서 신설에 따라 재난 시에 조례 개정 대신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대부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

나. 대부료 감액 가능 폭 확대

교육용도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, 지속적으로 폐교가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 시 연간 대부료의 감액 가능 폭 확대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)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
제3조의2제1항제1호 중 “500”을 “500. 단, 영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1천분의 800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300”을 “300. 단, 영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1천분의 50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난에 따른 인하된 요율 적용례)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입은 피해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) ① (생략) 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 및 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한다. < <u>단서 신설</u> >	제3조(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및 매각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)에 따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(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)을 적용할 수 있다.</u>
③ ~ ⑤ (생략) 제3조의2(대부료의 감액 등)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자산을	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3조의2(대부료의 감액 등) ①-- -----

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교육용시설, 사회복지시설, 문화시설, 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·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

2.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: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

② (생략)

-----.

1. -----

----- 50

0. 단, 영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경우 1천분의 80
0

2. -----

----- 300. 단, 영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는 경우 1천분의 500

②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529
	(044) 203 - 6915